

##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32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년 8월 일  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개정이유

- 지방재정법에서 은닉재산 신고의무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 
현행 조례와 중복되므로 신고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규제를  
폐지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함

### 주요골자

- 은닉재산 신고의무 사항 폐지
  - 신고의무 사항 지방재정법과 중복
  - 신고의무 사항 폐지로 주민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
-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관용어 정리
  - "사용허가코자" → "사용허가하고자"로 함.

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관계법령 발췌 : 따로붙임

##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, 동조 제3항중 “은닉재산신고서”를 “은닉재산 신고” 로 한다.

제12조제1항중 “사용허가코자” 를 “사용허가하고자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신고자는 은닉재산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.</p> <p>④ 내지 ⑤ (생략)</p>	<p>제6조(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삭제)</p> <p>③ ----- 은닉재산신고 ----- ----- -----</p> <p>④ 내지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사용허가의 제한) ① 행정재산을 <u>사용허가코자할 때에는 사용목적</u>을 신중히 검토후 사용허가하여야 하며,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주어야 한다.</p>	<p>제12조(사용허가의 제한) ① ----- <u>사용허가하고자</u> ----- ----- -----</p>

## 관 계 법 령 발 체

### [지방재정법]

제88조(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)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### [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]

제6조(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) ①지방재정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(이하 “은닉재산”이라 한다.)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(이하 “신고자”라 한다.)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보상금액은 부동산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 20까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.
2. 신고된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.

②신고자는 은닉재산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 조사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

④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, 다만,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2. 재산담당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

⑤은닉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